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  
제1차 정무위원회

**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
**검 토 보 고**

〈참전유공자 등 양로지원 강화〉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5780, 2215782, 2215783호)

2026. 3.

**정 무 위 원 회**

**전 문 위 원 김 정 연**

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개 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1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.....         | 1  |
| 2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.. | 2  |
| 3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.....    | 3  |
| II . 검토의견: 참전유공자 등 양로지원 강화 .....           | 4 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


## I. 개 요

### 1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## 가. 제안경위

- (1) 제출자 : 정부
- (2) 제출일 : 2025. 12. 31.
- (3) 회부일 : 2026. 1. 2.

#### 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의2).

## 2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# 가. 제안경위

- (1) 제출자 : 정부
- (2) 제출일 : 2025. 12. 31.
- (3) 회부일 : 2026. 1. 2.

### 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3.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## 가. 제안경위

- (1) 제출자 : 정부
- (2) 제출일 : 2025. 12. 31.
- (3) 회부일 : 2026. 1. 2.

#### 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II. 검토의견: 참전유공자 등 양로지원 강화

- 3건의 개정안<sup>1)</sup>은 보훈보상대상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|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54조의2(양로지원) <u>보훈보상대상자</u> 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제54조의2(양로지원) <u>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서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. <u>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</u> |

1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5780호)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
|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의2(양로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제8조의2(양로지원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 |
| 1.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(양로지원)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없는 사람(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제8조(양로지원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현행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양로지원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의식주, 의료 서비스 및 사후 묘지안장 등을 제공함으로써,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5782호)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5783호)

-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위해 1997년 6월 보훈기금을 투입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양로시설인 ‘보훈원2)’을 건립하였으며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.

### <양로지원 제도 현황>

| 구분    | 입소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적    | ·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등을 통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대상 | ·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<br>·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(자녀는 제외)<br>· 참전유공자,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보훈보상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자격 | · 부양의무자 없는(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)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<br>*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<br>* 참전유공자,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65세 이상<br>·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인 경우 함께 입소 가능<br>* 참전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·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|

- 양로지원의 대상을 살펴보면, 독립유공자는 본인 및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국가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5·18민주유공자는 본인 및 유족(자녀 제외), 참전유공자·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·보훈보상대상자(이하 “참전유공자등”)는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음.

2) 보훈원 현황(참고자료) 참조(p.14)

- 또한,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본인이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배우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참전유공자들은 배우자 동반 입소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.

### <양로지원 대상별 비교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독립<br>유공자법                   | 국가<br>유공자법          | 특수임무<br>유공자법 | 5·18민주<br>유공자법 | 참전<br>유공자법 | 고엽제법               | 보훈보상<br>대상자법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원<br>대상              | 본인 및<br>유족 중<br>보상금을<br>받는 자 | 본인 및 유족<br>(자녀는 제외)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| 본인<br>(2세환자<br>제외) | 본인           |
| 배우자<br>동반 입소<br>가능 여부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| ×          | ×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의 배우자를 두고 홀로 입소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보훈원 내 공실이 많음에도(2026년 현재 기준 입소율 47.0%) 양로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

### <최근 5년간 보훈원 정·현원 현황>

| 구분    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정원(명)  | 215   | 215   | 215   | 215   | 215   |
| 현원(명)  | 133   | 123   | 116   | 106   | 101   |
| 입소율(%) | 61.9  | 57.2  | 54.0  | 49.3  | 47.0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□ 또한, 유족을 예우·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타 대상자들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<sup>3)</sup>의 유족은 법적 지원 대상임에도 양로지원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바, 유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,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도 양로지원을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○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는 보상체계를 고려하여, 양로지원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□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등의 배우자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,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양로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3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
1. 재해사망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2. 재해부상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3. 재해사망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재해부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□ 다만, 2024년 국가보훈부 결산 심사 시 보훈원 입소율이 매년 감소<sup>4)</sup>하고 있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<sup>5)</sup>, 2018년 실시한 보훈원 이용만족도 조사<sup>6)</sup>에서도 보훈원 입소 결정에 대한 만족도는 85%로 높은 반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7%로 다소 불만족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보훈원은 건립 이후 리모델링이 실시된 바 없으며, 안전 및 생활에 필수적인 공사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<sup>7)</sup>.

따라서,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른 보훈원 입소 대상 확대가 실질적인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1997년 건립된 보훈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양질의 양로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#### <최근 5년간 보훈원 시설 개보수 현황>

| 구분    | 집행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| 집행액<br>(백만원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21년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2022년 | · 보훈원 방화셔터 및 피난안내유도선 설치 등 3건 | 30           |
| 2023년 | · 보훈원 옥상 방수공사 등 18건          | 128          |
| 2024년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2025년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4) ('21) 61.9% → ('22) 57.2% → ('23) 54.0% → ('24) 49.3% → ('25) 47.0%

5) 「2024회계연도 정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」, 정부위원회, 2025.8., p.47

6) 국가보훈처·와이즈포스트(주), 「보훈복지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」, 2018.11., p.79

7) 국가보훈부는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.

□ 참고로, 국가보훈부는 입소 인원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, 보훈원의 총 수용 인원은 215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입소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추가 예산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임.

□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체계 자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.

○ 첫째, 개정안에 따르면, 배우자는 양로지원 대상자와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양로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. 특히, 유족이 양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전유공자·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보훈원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, 배우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둘째,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각각 법 적용 대상이므로(참전유공자법 '26.3.17.시행)<sup>8)9)</sup>, 「국가보안법」 위반 등

8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자)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[시행일: 2026. 3. 17.]

9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나, 상이등급 미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바, 제28조제2항<sup>10)</sup>을 개정하여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양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- 셋째, 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경우 함께 지원받을 배우자의 정의 규정이 있으나<sup>11)</sup>,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함께 지원받을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바, 「고엽제

- 
1. 배우자
  2. 자녀
  3. 부모
 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 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- 10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(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)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- ③ ~ ⑥ (생략)

- 11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
2. 자녀
3. 부모
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적용 대상자)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은 제7조의9와 제8조의5에서 배우자를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<sup>12)</sup>를 말한다”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107 |

1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우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자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부모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
## 참 고

## 보훈원 (양로시설) 현황

### □ 입소 대상

-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(수원 보훈원 1개소만 있음)
- 무의탁 남 65세, 여 60세 이상 자(상이자는 남 60세, 여 55세이상)

### □ 규 모

- 면적 : 대지 12,530㎡, 건물 10,340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- 주요 시설
  - 주거시설(126실) : 1인실 62실, 2인실 52실, 3인실 5실, 전문요양 7실
  - 편의 및 부대시설 : 목욕탕, 의무실, 물리치료실, 체력단련실, 장례식장, 강당, 식당, 노래방, 남·여 프로그램실, 탁구장, 이·미용실, 게이트볼장, 산책로 등
  - 창훈묘원(공동묘지) 안장 현황 \* 경기 화성시 봉담면 소재, 면적 1,713평  
· 현재 234기 안장, 잔여기수 86기
- 건립년도 : 1997. 6월 신축
- 보훈원 입소현황

(‘25.12월 기준, 단위: 명)

| 성별 | 정원  | 현원  | 본인 |    |    |      |    |     |    | 유족 |     |    |     |
|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|
|    |     |     | 소계 | 독립 | 국가 | 5.18 | 특수 | 고엽제 | 참전 | 소계 | 배우자 | 부모 | 손자녀 |
| 남  | 215 | 40  | 36 | 1  | 22 | -    | -  | 2   | 11 | 4  | -   | 1  | 3   |
| 여  |     | 60  | 3  | -  | -  | -    | -  | -   | 3  | 57 | 54  | 1  | 2   |
| 계  |     | 100 | 39 | 1  | 22 | -    | -  | 2   | 14 | 61 | 54  | 2  | 5   |

※ ‘06년 이후 양육지원 실적 없음

자료: 국가보훈부

